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여러분의 권리

차별은 다음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직장
-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숙박
- 등록된 클럽.

팬데믹 기간 중 여러분의 권리

코로나19 팬데믹과 제한 기간 중에도 여러분은 차별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종, 임신, 질환, 또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NSW주 법률 하에서 보호받는 몇가지 다른 사유들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의 예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고용주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회사 내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분의 임신 또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이유로 다른 동료와 다르게 대우받는 경우

여러분이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계 종사자임을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주택이 오염될 가능성을 임대주가 우려해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인종을 이유로 공공 장소에서 학대당하는 경우.
인종에는 피부색, 국적, 혈통, 민족 및/또는 민족종교 배경이 포함됨.

인종을 이유로 가게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우

팬데믹 기간 중 여러분의 의무

여러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행되는 법률 및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최신 건강관련 조언은 NSW Health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인종, 코로나19 확진 여부, 또는 NSW 법률로 보호된 다른 사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지닙니다.





Anti-Discrimination
New South Wales

문의

전화 (02) 9268 5544

무료 전화 1800 670 812

adbcontact@justice.nsw.gov.au

불평서 접수

complaintsadb@justice.nsw.gov.au

통번역서비스

13 14 50

웹사이트

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Parramatta

Level 7, 10 Valentine Avenue

Parramatta NSW 2150

PO Box W213, Parramatta

Westfield NSW 2150

전화 (02) 9268 5555

팩스 (02) 9268 5500



NSW주 차별금지위원회는
문의 및 불평서 처리,
차별과 차별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의식
개선, 변화를 위한
행동 이행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의
차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SW주 차별금지위원회는
차별금지법 1977 (Anti-
Discrimination Act
1977)을 집행합니다.